#### [별지 제2호서식]

# <u>청 원 원문</u>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 [청원의 취지]

주식 투자 활성화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및 투자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직무 유관 주식 취득을 금지하여,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무분별히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 백지신탁 하지 않거나 추가 취득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16명(23□2. 자료),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23.3.13.), 국회의원 296명중 53명 (23.6.2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로, 제대로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유관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고위공직자 11명이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5명은 끝까지 백지신탁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무력해지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통로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현행법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총 가액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위 의무를 무분별하게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고위공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를 청원합니다.

가. 현행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2항과 제13항을 폐지하고, 제12항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로한다.

나. 제14조의5 제13항을 현행 제14조의5 14항과 같게 한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2항과 제13항을 폐지하고, 제12항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5 제13항을 현행 제14조의5 14항과 같게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정안 제 14조의 5 (주식 백 지 신탁 심 사위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 ① (생략) - 逆 (현행과 같음) \_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 \_\_\_ 誦) \_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저1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 관련성 심사청구• 결정에 관련 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 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된 자료를 열 람•복사하거 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獨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① (현행 제14항과 같음) 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유리위원히"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 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 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 다. 〈폐 지〉 ① (생략)